

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563호 1997. 12.31

주 요 골 자

- 가.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단계판매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다단계판매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령 제4조제1항 제7호, 제7조제6항 내지 제8항, 제8조제3항 및 제84조).
-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제1항제8호).
-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하여 동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함(령 제38조제1항제21호의2).
- 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사업별 사용면책비율에 따라 배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별 사용면책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배분계산하도록 함(령 제48조의2제2항).
- 마.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사업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8년 1월 1일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전환일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 과세로 전환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의 매입세액을 과세전환후 최초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납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

개정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사업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8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납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단 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회보